

대법원 2023다247450 손해배상(지) 사건 보도자료

대법원 공보관실(02-3480-1451)

피고(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 회사)가 북미 지역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'베이비 샤크(Baby Shark)'('피고 곡')를 제작하고 유튜브 등에 게시하자, 그 전에 같은 구전 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'베이비 샤크(Baby Shark)'('원고 곡')를 제작했던 원고가 저작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안임
대법원 1부(주심 대법관 노태악)는, 원고 곡이 원저작물인 구전 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 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한 원심판단을 수긍하여, 원고의 상고를 기각하였음(대법원 2025. 8. 14. 선고 2023다247450 판결)

1. 사안의 개요

- 원고(미국인)는 2011년경 북미 지역 어린 학생들의 여름 캠프 등에서 주로 불리는 구전 가요(이하 '이 사건 구전가요')를 원저작물로 하여 '베이비 샤크(Baby Shark)'(이하 '원고 곡')를 제작하여 음반으로 출시하고, 그 후에 뮤직비디오를 자신이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도 게시함
- 피고는 디지털콘텐츠 제작 및 유통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인데,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여 동요 '베이비 샤크(Baby Shark)'(이하 '피고 곡')를 제작하여 2015년경에 피고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게시하고, 그 후 뮤직비디오도 만들어 게시함
- 이에 원고는 피고 곡이 원고 곡과 실질적으로 유사하다고 주장하며 피고를 상대로 저작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을 청구함
- [참고] 저작권 침해의 요건
 - 저작권 침해는, ①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에 의거하여 그것을 이

용하였을 것(의거관계), ② 피고 저작물이 원고 저작물의 창작적인 표현과 실질적 유사성이 있을 것이 인정되어야 함

2. 소송의 경과

■ 제1심 ➡ 원고 패

-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에 새롭게 창작요소를 부가하지 않았으므로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
- (가정적 판단)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,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실질적 유사성이 인정되지 않음

■ 원심 ➡ 항소기각

- 원고 곡은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지 않음
- (가정적 판단)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더라도, 피고 곡은 원고 곡과 의거관계가 인정되지 않음
- 원고가 상고함

3. 대법원의 판단

가. 쟁점

-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를 원저작물로 하는 2차적저작물에 해당하는지 여부
-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되었는지 여부

나. 판결 결과

■ 상고기각

다. 판단 근거

- 원고 곡이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하여는 원저작물을 기초로 하

되 원저작물과 실질적 유사성을 유지하고, 이것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·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,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·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음

-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그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의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함
- 제1심법원의 감정촉탁결과 등을 토대로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은 수긍할 수 있음
- 피고 곡이 원고 곡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인지에 관한 원심판단은 가정적인 것으로, 원고 곡을 2차적저작물로 볼 수 없다는 원심판단에 잘못이 없는 이상, 원심의 가정적 판단의 당부는 판결에 영향이 없음

4. 판결의 의의

- ▣ 대법원은, 원고 곡이 이 사건 구전가요와 사회통념상 별개의 저작물이라고 볼 정도의 실질적인 개변에 이르지 아니하여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어렵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
- ▣ 대법원은,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구전가요를 이용하여 새로운 곡을 작성하는 경우 2차적저작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, 원저작물에 사회통념상 새로운 저작물이 될 수 있을 정도의 수정·증감을 가하여 새로운 창작성이 부가되어야 하는 것이며, 원저작물에 다소의 수정·증감을 가한 것에 불과하여 독창적인 저작물이라고 볼 수 없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는 기존 법리를 재확인하였음